

야외 공간의 재해석: 식당 및 소매점 야외 좌석 신규 설치 및 확장 가이드라인



DC의 1단계 경제 재개의 일환으로, 야외 공간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식당은 인도, 골목, 길가 주차 공간 및 차로 등을 파클렛(Parklet)과 야외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조직(특히, 자문위원회(Advisory Neighborhood Commissions, ANC), 메인스트리트 조직(Main Street Organizations), 비즈니스 개선 지구(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BID)는 전체 주차 블록이나 차로를 스트리터리(streeteries)로, 골목이나 다른 공공 공간의 일부를 다이닝 플라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소매점은 커브사이드 픽업 및 배달을 위해 야외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당 영업을 재개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DC는 영업 재개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DC 보건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침 및 국내외 모범 관행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적용 범위

새로운 야외 좌석 공간 확장과 생성은 자격이 되는 식당과 허가를 받은 음식 업체들에게 점유 허가서(Certificate of Occupancy)를 기반으로 임시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야외 공간, 플라자 또는 골목 폐쇄는 비즈니스 개선 지구(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BID), 메인스트리트 조직(Main Street Organizations) 또는 자문위원회(Advisory Neighborhood Commissions, ANC)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 공간의 사용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 공간이 새로운 좌석 확장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모든 상황에 한 가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비즈니스, 상업 지구, 지역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여러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신청인은 다음의 장소에서 새로운 좌석 확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만 해당

인도

- 식당 바로 앞, 그리고
- 인접한 1층에 자리잡고 있는 비즈니스나 건물 소유주의 서면 동의를 받은 인접 공간

주차 공간

- 식당 바로 앞(“파클렛”이라고도 함), 그리고
- 인접한 1층에 자리잡고 있는 비즈니스나 건물 소유주의 서면 동의를 받은 인접 공간

커뮤니티 조직만 해당

스트리터리(Stretery): 주차장 또는 차로 전체 블록, 그리고

다이닝 플라자: 골목이나 다른 공공 공간의 일부

공공 공간의 설계 요건

비즈니스들은 도로 경계석(curb)과 건물 전면 사이의 폭을 측정하여 인접한 인도의 폭을 정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공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최소 거리이며, 일부의 경우에는 바닥에 테이프를 붙여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인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최소 6피트(일부 장소에서는 기존 인도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더 큰 최소 폭이 요구될 수 있음)
- 야외 좌석 공간과 장애물 없는 보행자 통로 간에 4피트 간격(이 공간에는 쉽게 옮길 수 있는 가벼운 가구가 있어도 됨)
- 의자 등받이에서 인접한 테이블까지 6피트 간격
- 야외 좌석과 인접 비즈니스 정면 사이에 4피트(신청인이 인접 비즈니스 앞쪽까지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면 동의서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기존 사이드워크 카페가 막힌 공간의 카페인 경우, 날씨에 상관없이 항상 공간을 막지 않은 상태로 운영해야 함
- 소화전으로부터 3피트 거리 확보

장벽

파클렛과 같이 주차 공간으로 좌석을 확장한 경우, DC 교통부(DDOT)의 파클렛 가이드라인에서 세부 내용을 참조하고 경제 재개 1단계에서는 지면보다 높은 플랫폼(raised platform)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장애인법(ADA)에서 요구하는 경사로를 임시 설치해야 합니다.

전체 블록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는 좌석을 설치한 스트리트리(stretery)는 블록의 각 끝을 NCHRP 350-TL-1 중 방향 장벽(즉, 저지(jersey) 또는 물을 채운 장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DC 교통부(DDOT)는 거리 분류 등급, 통행량 및 제한 속도 등에 따라 장벽의 필요 및 요건을 결정할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야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모든 차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경우, 요구되는 20피트 소방도로 접근을 위해 운전자가 있는 대형 차량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은 화분, 우유 상자, 짚단이나 유사한 재료를 사용해 일종의 추가 버퍼링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는 시각적인 효과만을 위한 것이므로 장벽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가구

가구에는 테이블, 의자, 테이블 우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0피트x10피트 보다 더 큰 텐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간 확보

좌석은 인접한 테이블 좌석과 6피트 떨어져 있어야 하며 6피트의 보행자 통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픽 설명

다음 페이지들에 있는 도해들은 공공 공간이 식당의 좌석을 확장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기 위해 일관성 있는 모양을 사용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어디에서 있어야 할지를 알리기 위해 바닥에 6피트 간격을 두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장벽

DC 교통부는 도로 일부를 사용하는 식당들에 장벽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장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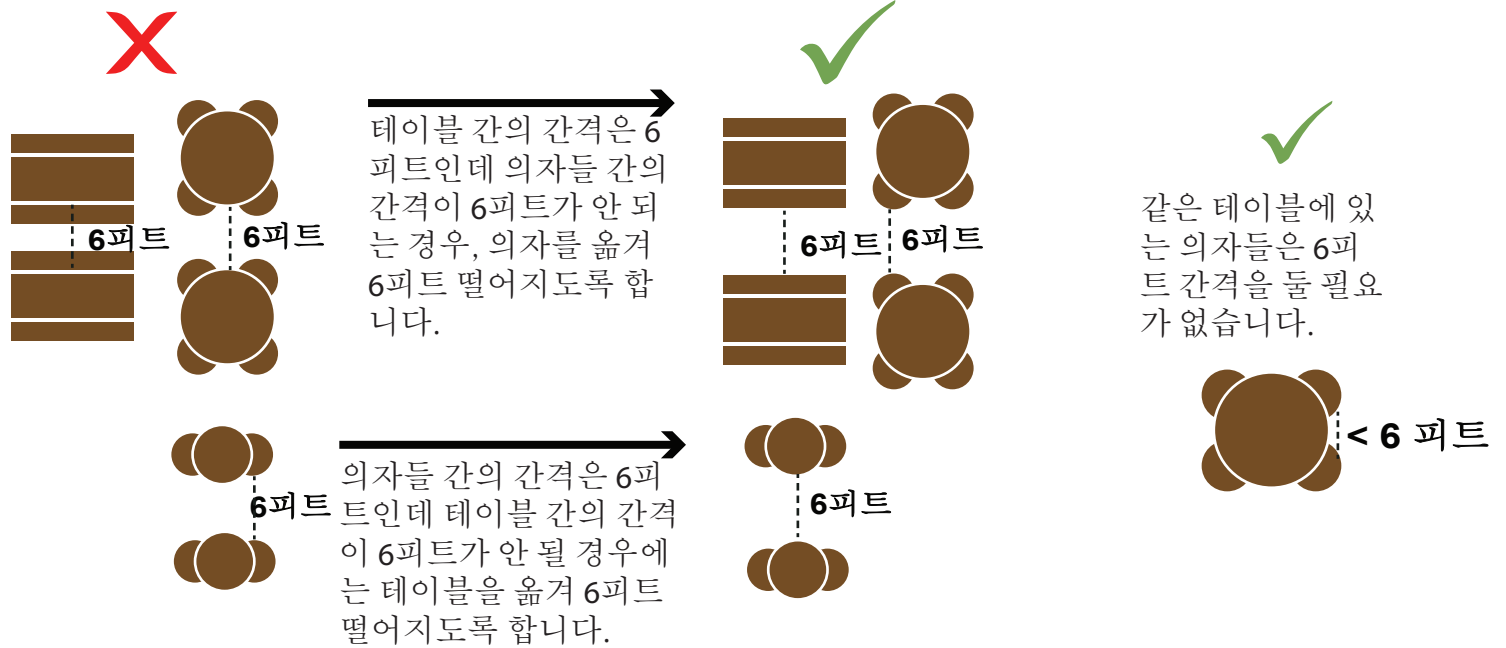
검은색 장벽은 물을 채운 장벽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경사로

인도와 같은 높이의 지면에 있지 않은 야외 좌석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식당 좌석 간격

식당은 야외 좌석에 기존에 있는 가구를 사용할 것이 권장되며 의자와 인접 테이블 간 최소 6피트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인도에 기존 좌석이 있는 식당

최소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인접 보행자 통로: 6피트

테이블 간의 간격: 6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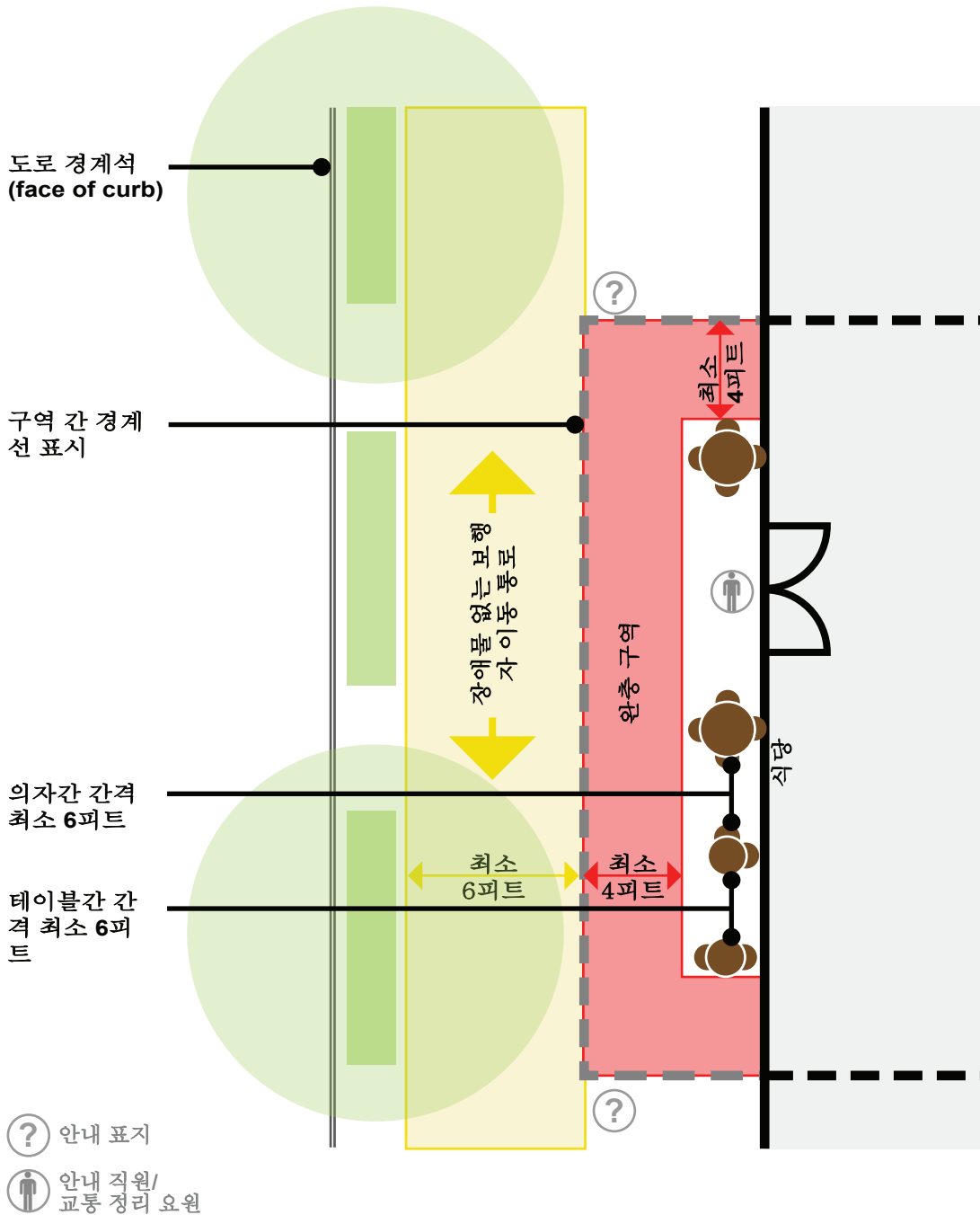
보행자 통로와 테이블 간의 간격: 4피트

테이프록 표시(필수)

장애물 없는 인도 폭

테이블 간의 간격

보행자 통로와 테이블 간의 간격



? 안내 표지

안내 직원/
교통 정리 요원

인도 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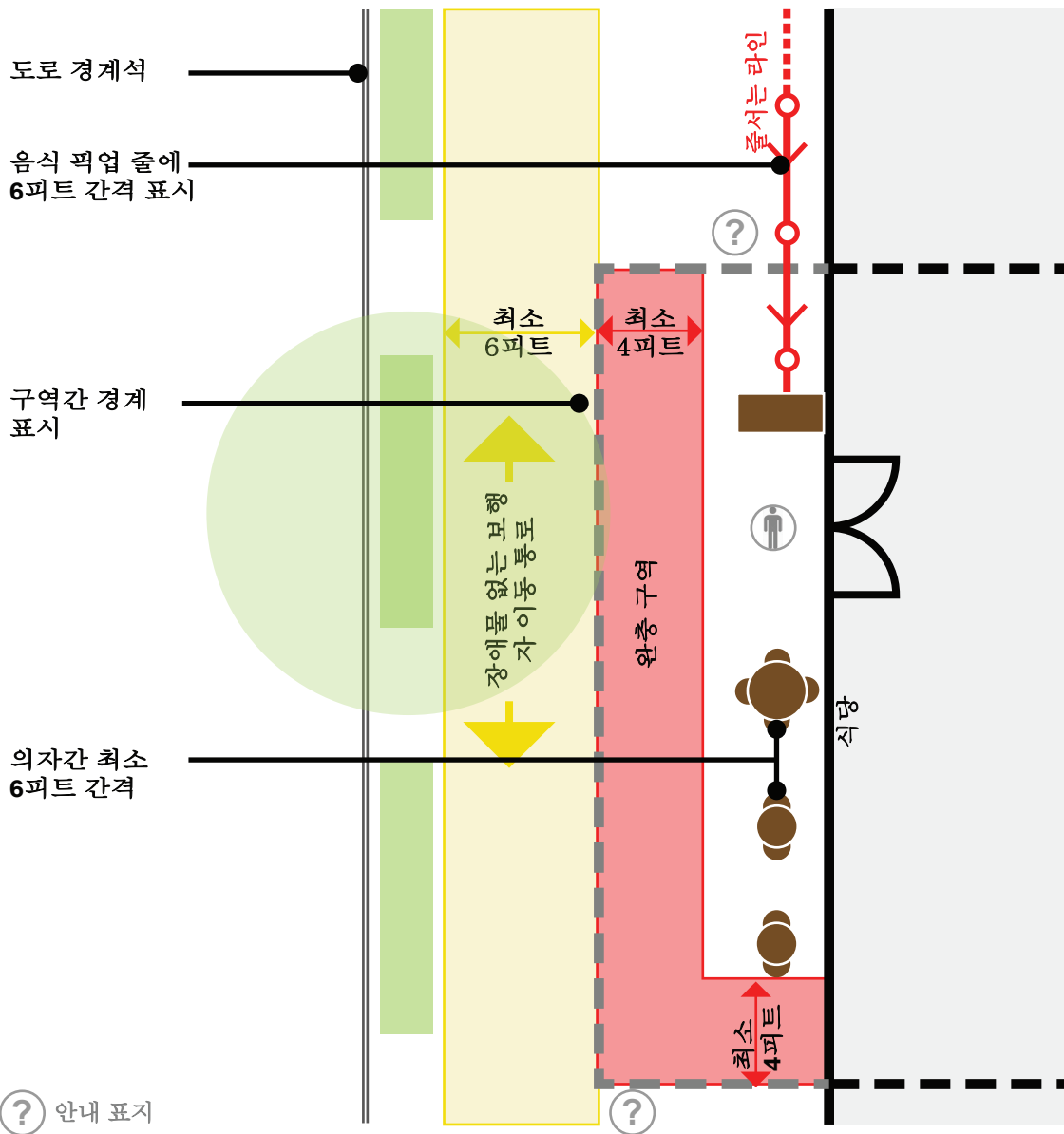
인도 좌석으로 나가는 출구와 픽업 구역이 있는 식당

최소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 인접 보행자 통로: 6피트
- 테이블 간의 간격: 6피트
- 줄 서서 기다리는 고객 간 간격: 6피트
- 보행자 통로와 테이블 간의 간격: 4피트

테이프 표시 (필수)

- 장애물 없는 인도 폭
- 테이블 간의 간격
- 테이블과 보행자 통로 사이의 간격
- 고객 줄서기 및 간격 두기



- ① 안내 표지
- ② 안내 직원/교통 정리 요원

음식 픽업이 있는 인도 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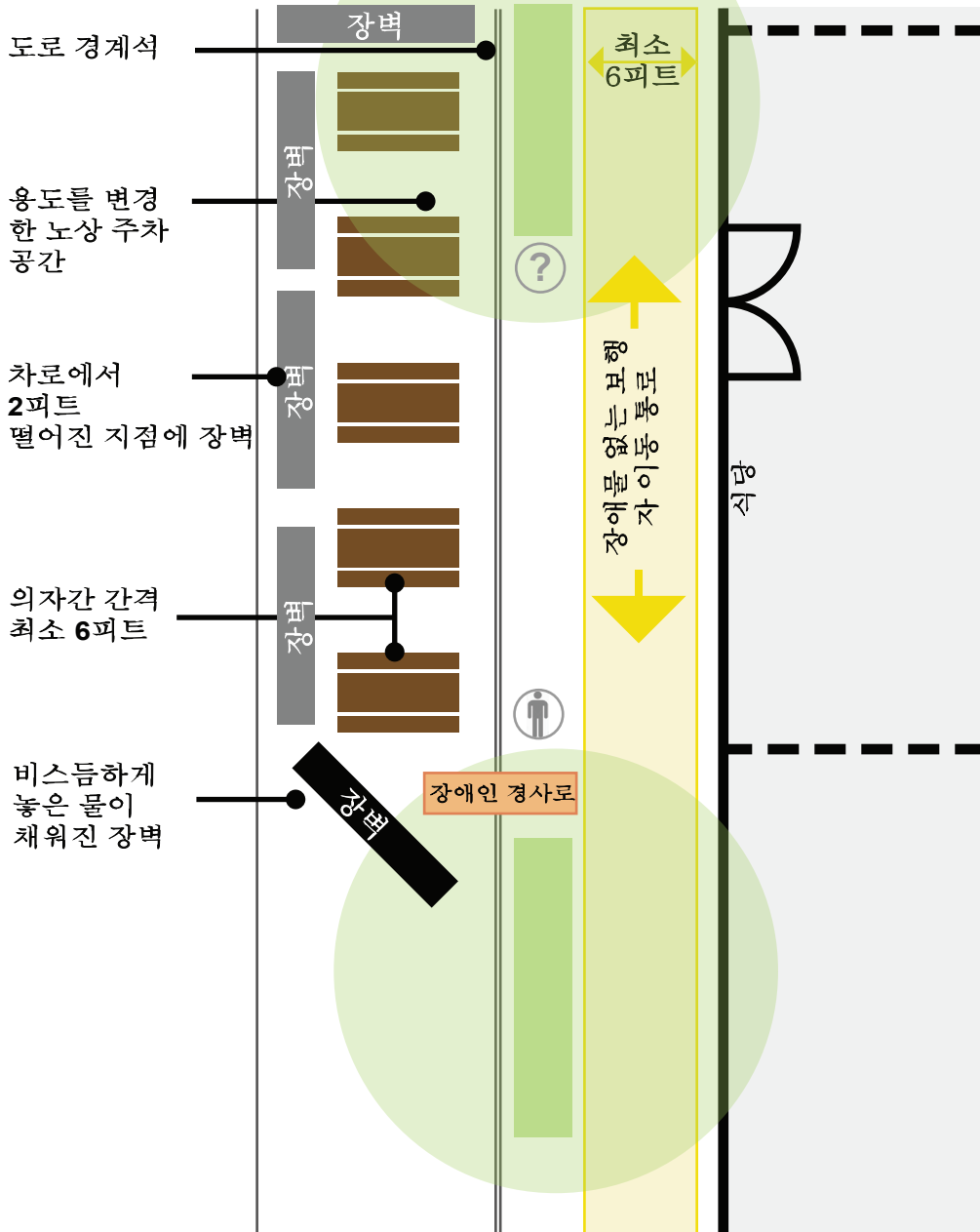
파클렛 좌석이 있는 식당

최소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 장애물 없는 인접 인도 폭: 6피트
- 야외 좌석 구역: 6피트 이상
- 테이블 간 거리: 6피트

테이프로 표시(필수)

- 장애물 없는 인도 폭
- 야외 좌석



① 안내 표지

② 안내 직원/교통 정리 요원

파클렛 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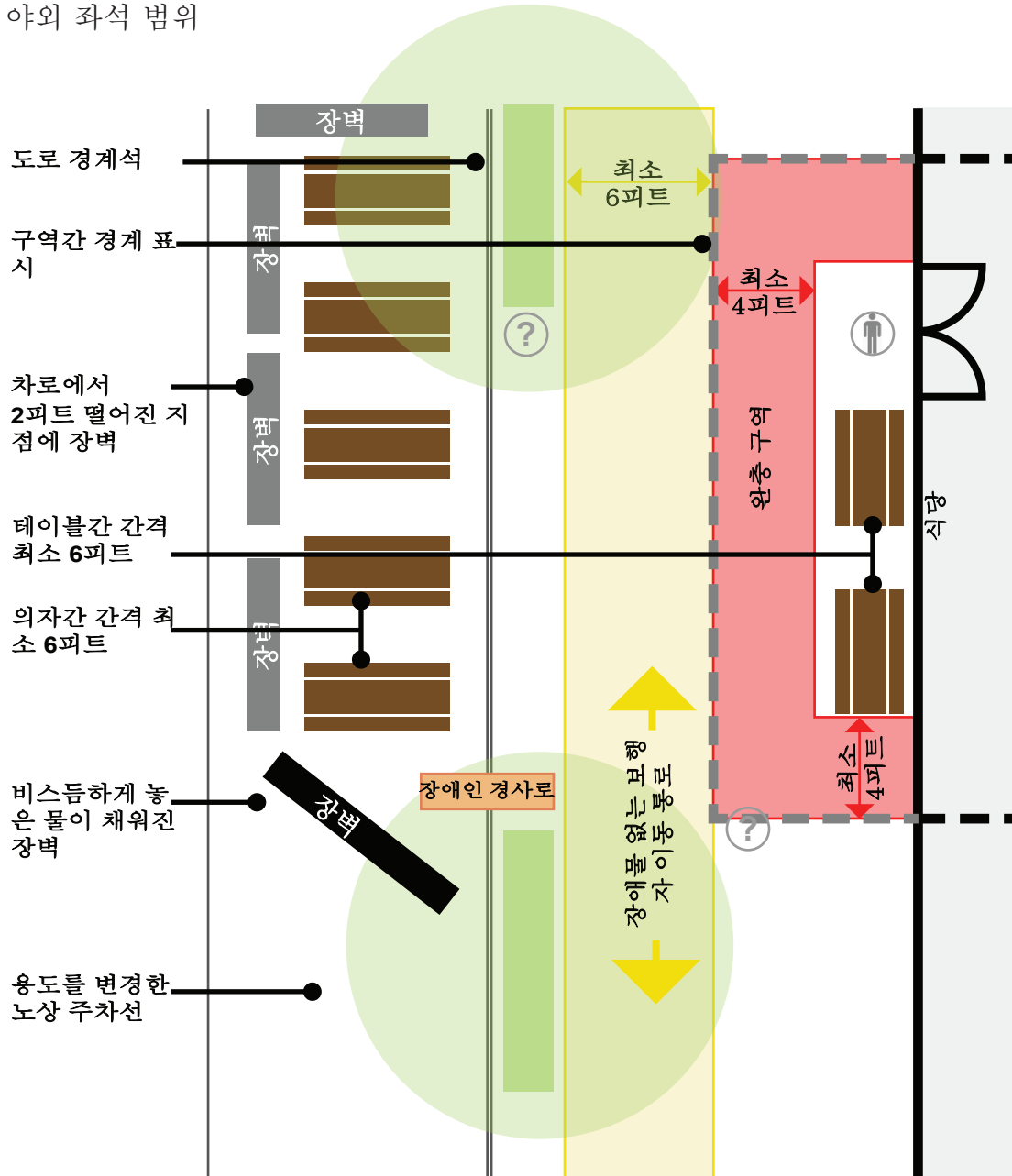
파클렛 좌석이 있는 식당

최소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 장애물 없는 인접 인도 폭: 6피트
- 야외 좌석 구역: 6피트
- 테이블 간의 거리: 6피트
- 보행자 통로와 테이블 간의 간격: 4피트

테이프로 표시(필수)

- 장애물 없는 인도 폭
- 야외 좌석 범위



- ? 안내 표지
- 인내 직원/교통 정리 요원

파클렛 좌석이 있는 인도 좌석

골목으로 좌석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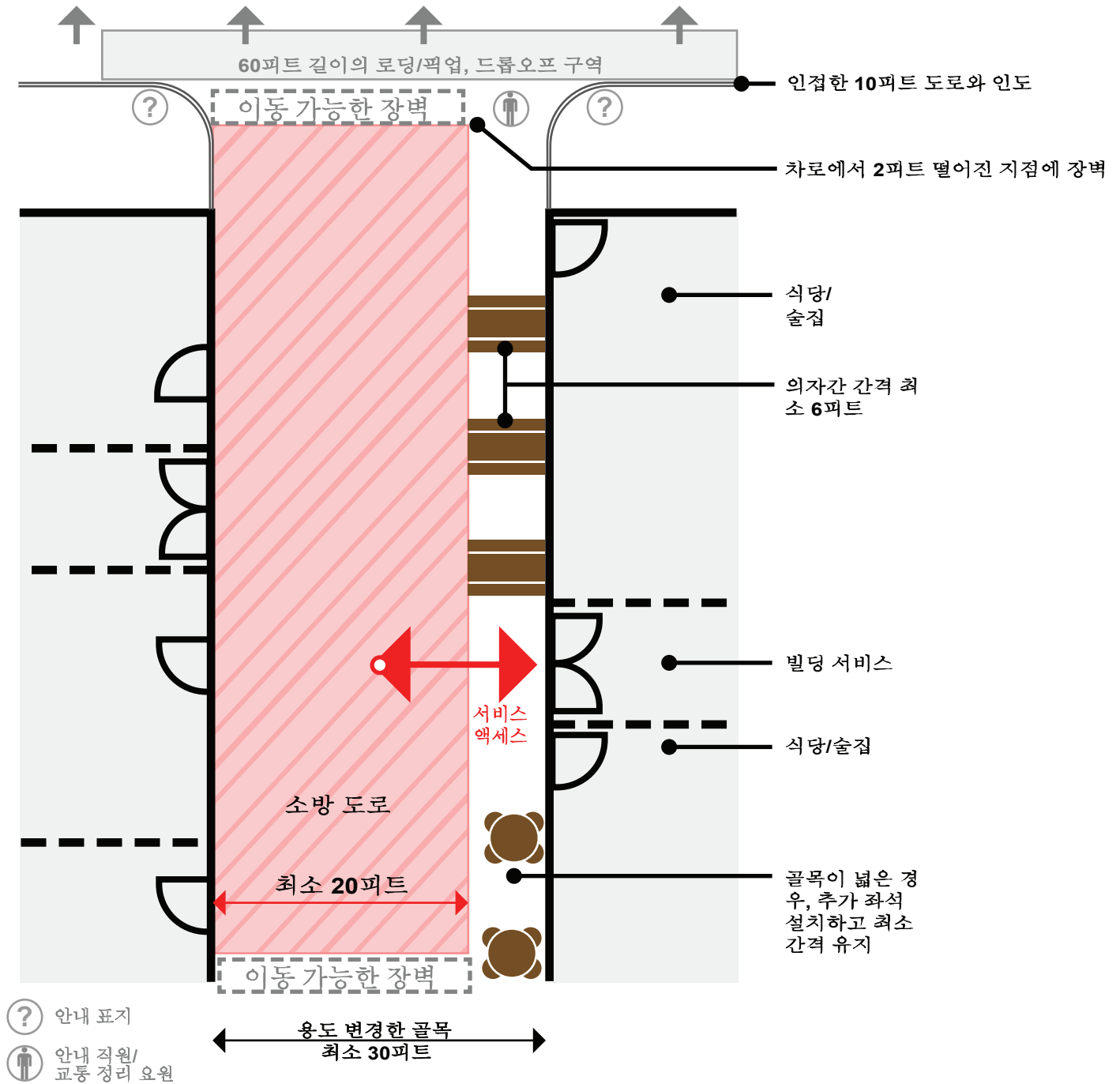
이 방법은 통행에 필요하지 않은 여분의 구간이 있는 골목으로 좌석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 식당에서 사용하는 좌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식당, 푸드 트럭이나 노점상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좌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DC 교통부는 통행에 필요한 구간을 평가하고 소방 방재청 (FEMS) 과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최소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 테이블 사이 거리: 6피트
- 소방 도로: 20피트
- 업소 입구까지 장애물 없는 통로: 6피트

테이프로 표시 (필수)

- 소방 도로
- 좌석 구역
- 차량 진입 방지 장벽



차로 폐쇄: 모든 차로

정해진 기간 동안 모든 도로를 폐쇄해 차량 통행을 막습니다. 식당들은 주차 공간과 모든 차로까지 다이닝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장소

신청인은 1층 도로의 75% 이상이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블록에 대해 파트타임 블록 폐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블록 폐쇄가 허용되지 않는 곳:

- 교차로, 프리웨이 또는 익스프레스웨이, 또는 주요 간선도로 구간
- 비상 시설(예: 소방서, 경찰서 등)이 있는 도로 구간
- WMATA 버스 노선(메트로버스 주요 노선, 지역 노선 또는 커뮤니티 노선), DC 순환버스 노선, DC 전차 노선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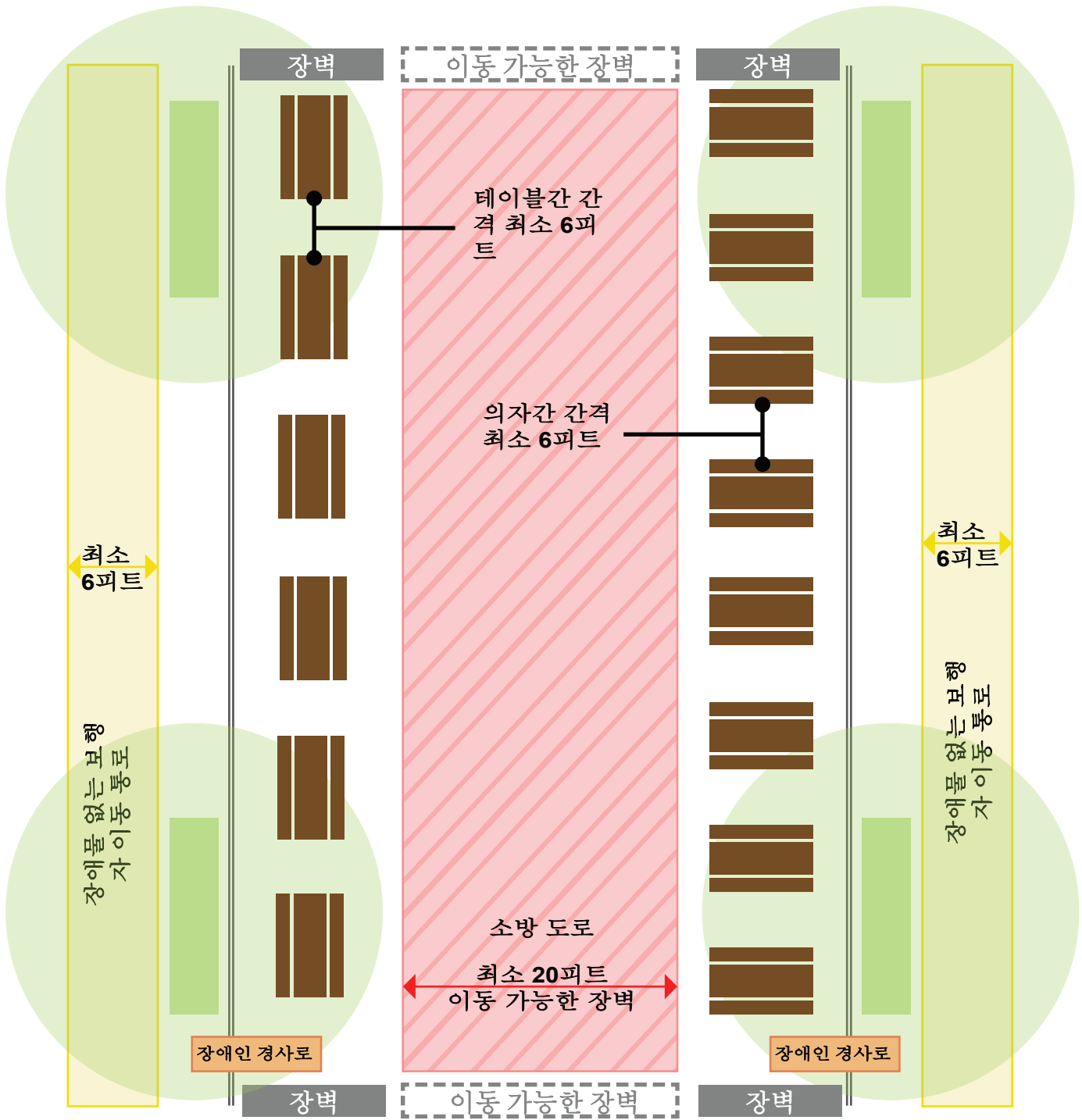
파트타임 블록 폐쇄는 다음 시간대에 도로를 차단해 차량 통행을 막습니다.

-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4:00 pm부터 11:00 pm 까지(해피아워 및 디너)
- 토요일 10:00 am부터 일요일 10:00 pm 까지(아침, 브런치, 런치, 디너)

풀타임 블록 폐쇄는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모든 차로, 전체 도로를 차단해 차량 통행을 막습니다. 식당들은 지정된 소방 도로를 제외하고 전체 도로로 다이닝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조건

- 폐쇄로 인해 소방 도로, 소화전 접근 또는 기타 비상 차량 진입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함
- 대형차량과 운전자가 지정된 20피트 소방 도로에 위치해 있어야 함
- 폐쇄로 인해 사유지(예: 드라이브웨이, 배달/로딩 구역, 차고 등) 진입을 방해해서는 안 됨
- 식당은 블록 폐쇄 종료 시간 1시간 전에 가구를 식당 안으로 옮겨야 함
- WMATA 버스 노선, DC 순환버스 노선 및 DC 전차 노선을 변경해야 하는 영향이 있는지 고려해야 함
- 공공사업국(Department of Public Works)에서 실시하는 도로 청소나 지정된 환경미화 팀이 수행하는 정기적인 청소를 위해 지정된 시간에는 도로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워야 함



스트리터리
 옵션 2 & 3
 모든 차로 폐쇄: 파트타임 & 풀타임

- ? 표지판
- 안내 직원/교통 정리 요원

등록 및 허가 받기

새롭게 야외 공간 사용을 신청하거나 사용 연장 신청을 하고자 하는 모든 식당은 coronavirus.dc.gov/phaseone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한 후, 기존에 사이드워크 카페 허가증이 있는 식당들은 등록 확인증을 받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식당들은 등록을 한 후 tops.ddot.dc.gov에서 공공 공간 사용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공공간 사용	Google 양식으로 등록 필요 여부	TOPS 허가증 필요 여부	TOPS 허가증 유형	영업 허용 시기
기존 사이드워크 카페(기존 공간에서 변경 없음)	아니오	아니오	해당 없음	즉시
기존 사이드워크 카페(기존 공간에서 확장)	예	예	임시 사이드워크 테이블 서비스*	등록 완료 시
신규 사이드워크 테이블 서비스	예	예	임시 사이드워크 테이블 서비스*	등록 완료 시
파클렛	예	예	파클렛**	허가증 승인 시
스트리트리	예	예	기타 특별 이벤트*	허가증 승인 시
플라자 & 골목	예	예	기타 특별 이벤트*	허가증 승인 시

*TOPS의 점유(Occupancy) 섹션에서 찾아볼 수 있음

**TOPS의 공공 공간 렌탈/연간 허가증(Public Space Rental/ Annual Permit) 섹션에서 찾아볼 수 있음

보험 요구사항

야외 좌석에서 영업하는 모든 비즈니스는 보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범주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보험 커버리지가 있음을 증명하는 보험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증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컬럼비아 특별구(DC) 정부가,

- 증서 보유자(certificate holder)로 지정되어 있어야 함
- 추가 피보험자로 지정되어 있어야 함
- 대위권 포기(waiver of subrogation)를 받았음

질문이 있는 경우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orm.insurance@dc.gov

점포 앞 이외 공간도 사용하는 식당/사이드워크 카페(주류 판매를 안 하는 경우)

커버리지	건당 보상 한도액	누적 보상 한도액
일반배상책임	\$1,000,000	\$2,000,000
자동차배상책임***	\$1,000,000	해당 없음
포괄배상책임	\$2,000,000	\$2,000,000

점포 앞 이외 공간도 사용하는 식당/사이드워크 카페(주류 판매를 하는 경우)

커버리지	건당 보상 한도액	누적 보상 한도액
일반배상책임	\$1,000,000	\$2,000,000
자동차배상책임***	\$1,000,000	해당 없음
주류배상책임	\$1,000,000	\$1,000,000
포괄배상책임	\$3,000,000	\$3,000,000

***(해당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기존 또는 확장된 야외 좌석이 있는 식당은 언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2020년 5월29일, 금요일부터 인도에 기존의 또는 새로운 야외 좌석이 있는 식당은 [coronavirus.dc.gov](https://www.coronavirus.dc.gov) 에서 등록해야 하고 등록이 완료되면 즉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좌석을 확장하지 않는 식당의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클렛과 스트리터리는 추가로 TOPS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제안한 도로나 차로에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회(ANC)에서는 어떤 종류의 허가증을 검토하나요?

이와 같은 공공 공간의 사용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ANC 검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레벨 3 스트리터리는 예외)

허가증은 얼마동안 유효한가요?

모든 야외 좌석 및 픽업/드롭오프 허가증은 현재 지정된 공중보건 비상사태 만료일인 2020년 7월24일에 만료되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식당 좌석에 “6피트 거리두기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고객들이 한 테이블에 앉는 경우에는 6피트 거리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적절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한, 각 테이블은 서로 6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그 간격은 의자 등받이에서 다른 의자 등받이까지의 거리로 측정합니다.

거리에 픽업 공간과 파클렛을 둘 수 있나요?

네, 기존의 규모와 인접 업소의 동의 여부에 따라 식당에 충분한 차량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면 두 가지를 모두 둘 수 있습니다.

인도와 지면 높이를 맞추기 위해 파클렛에 플랫폼을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임시 파클렛과 스트리터리에 플랫폼은 필요없지만 인도에서 좌석이 있는 곳을 연결하는 이동식 장애인 경사로는 있어야 합니다.

주류규제관리국(ABRA) 관련 사항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업소내 소매 라이선스 소지업체 (컨벤션 센터 식품 및 주류 소매점, 호텔, 다목적 시설, 나이트 클럽, 프라이빗 클럽, 식당 및 주점), 일센반 운송 업체 및 업소 내 판매 및 소비 허가가 있는 제조업체.

라이선스 소지 업체가 라이선스를 받은 사이드워크 카페나 썸머 가든을 확장할 수 있나요?

네, 그러나 라이선스 소지업체는 먼저 등록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공 공간(인도, 파클렛 또는 지정된 음식 및 리테일 구역)으로 좌석을 확장하고자 하는 라이선스 소지업체는 DC 교통부(DDOT)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유지로 좌석을 확장하려는 라이선스 소지업체도 동일한 등록 양식을 작성해야 하지만 해당되지 않는 질문들을 건너뛰라는 메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유지에 있는 야외 좌석은 DC 교통부(DDOT)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루프탑도 해당이 되나요?

새롭게 확장되는 야외 다이닝 좌석은 1층 및 지상과 같은 높이에만 허용됩니다. 썸머 가든으로 현재 라이선스가 있는 루프탑은 사용할 수 있으며, 상기의 모든 가이드라인(좌석 배치, 고객 줄서기, 그늘막 구조 모두 포함)이 적용됩니다.

라이선스 소지업체들이 야외 다이닝 공간을 공유할 수 있나요?

아니요.

조리된 식품을 제공해야 하는 요건이 있나요?

예. 라이선스 소지 업체는 메뉴에 최소 3가지 이상 조리된 식품 아이템을 포함해야 하며 테이블 당 하나 이상의 조리된 식품 주문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칩, 프레즐, 쿠키, 초콜릿 바, 견과류 등과 같이 미리 포장된 스낵은 조리된 식품이 될 수 없습니다.

판매하고/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음식은 직접 업소에서 라이선스 소지 업체가 조리를 하거나, 외부에서 라이선스를 소지한 업체 또는 DC 보건부에서 음식 판매/제공 승인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업체에서 조리한 음식이어야 합니다.

BYOB(자신의 술 가져오기)가 허용되나요?

아니요. 고객들 자신이 주류를 직접 가져와 마시는 것은 금지됩니다.

라이선스 소지 업체의 확장된 야외 다이닝 공간은 기존 합의서(Settlement Agreement)에 포함된 조항의 적용을 받나요?

아니요.

라이선스에 있는 라이선스 소지 업체의 기존 사이드워크 카페나 썸머 가든에 기존 합의서(Settlement Agreement) 조항이 적용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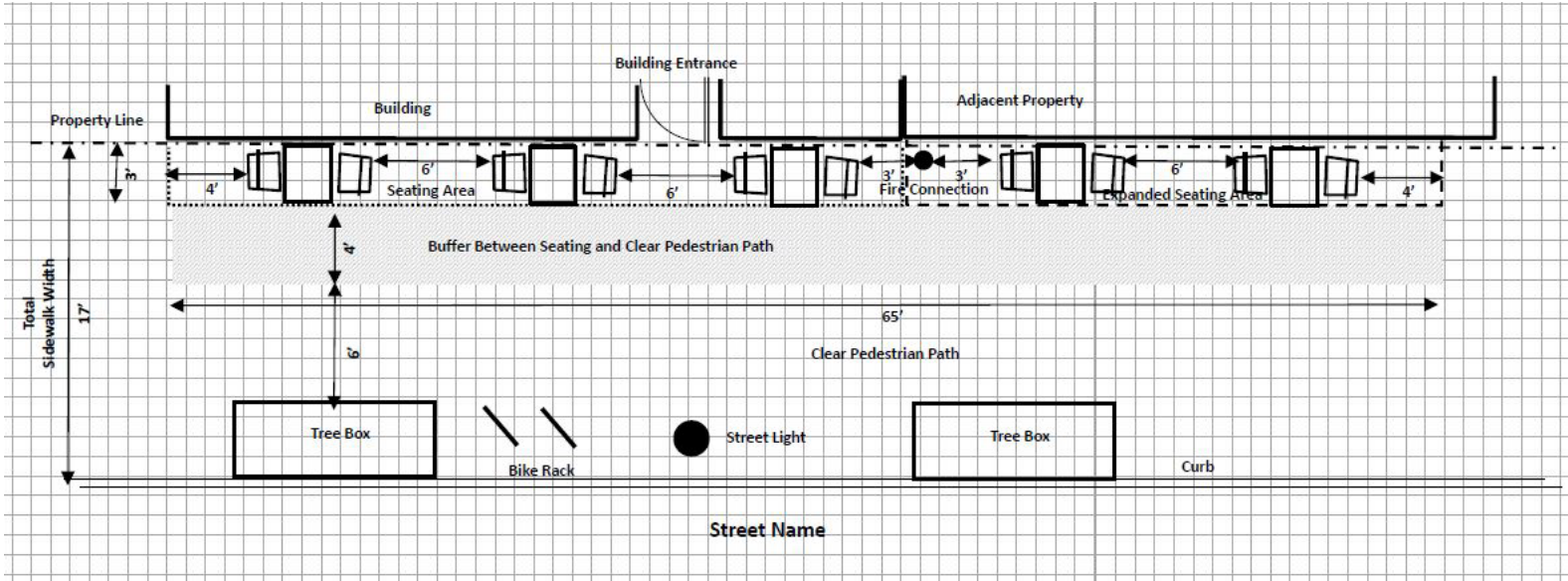
예. 현재 라이선스가 있는 야외 다이닝에 관한 합의서(Settlement Agreement) 당사자들은 ABC 위원회(ABC Board)에 최대 180일까지 특정 조항 면제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주류규제국(ABRA)과 관련한 추가 자주 묻는 질문은 여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록

부록1: 좌석 구역 배치 계획도 예시 및 체크리스트

좌석 구역 배치 계획도에는 인도의 보행자 이동 통로, 좌석 구역 및 좌석 구역 내의 테이블과 의자 사이에 적절한 거리가 충족되었음을 나타내는 치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예는 배치 계획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와 치수를 보여줍니다.



좌석 구역은 여러 DC 기관에서 검토한 안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확한 배치 계획도(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지면에서의 높이)

배치 계획도는 좌석 구역 주변의 공공 공간에 위치해 있는 모든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그려야 합니다. (신청인들이 야외 좌석 구역 배치 계획도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되는 배치 계획도 예시 및 템플릿 참조)

- 대지 경계선
- 가로수
- 가로등
- 테이블과 의자
- 좌석 구역 표시
- 확장된 좌석 구역 표시(해당되는 경우)
-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여주는 치수
- 좌석 구역과 인접 장애물 없는 보행자 이동 통로 사이 4피트 공간

참조: 차양, 파라솔, 화분 및 울타리를 사용하려는 모든 야외 좌석 구역에 대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필요합니다.

2. 현장 배치 및 가구

테이블, 의자, 기타 가구의 위치가 배치 계획도에 표시되어야 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테이블과 의자 사이 6피트 간격
- 인도에서 좌석 구역과 장애물 없는 인접 보행자 이동 통로 사이 4피트 공간
- 좌석 구역의 한쪽 끝과 좌석 구역 가장자리 사이의 4피트 공간
- 인도에서 파라솔, 텐트 또는 캐노피의 가장 낮은 점까지 8피트 떨어진 간격
- 화재 진압용 연결 송수관으로부터 3피트 떨어진 간격
- 좌석 구역은 임시로 화분을 사용해 최대 36인치까지 높이의 울타리로 둘러쌀 수 있지만, 모든 면이 36인치 위에서는 오픈되어 있어야 합니다.
- 모든 화분의 최대 높이 36인치 (화분에 있는 식물 높이를 포함)
- 모든 울타리의 최대 높이는 36인치로 대체로 오픈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 좌석 구역 내 또는 그 근처에서는 쓰레기 보관함을 둘 수 없습니다.

3. 인접 인도 폭

좌석 구역 근처의 장애물 없는 인도는 좌석 구역과 가장 가까이 있는 가로등, 나무 박스 또는 규제 표지판 기둥과 같은 장애물과의 거리가 최소 10피트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 좌석 구역과 인접 장애물 없는 보행자 통로 사이에는 최소 4피트 이상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 완충 구역과 가장 가까운 장애물 사이에 6피트 간격의 장애물 없는 보행자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 인접 버스 정류장에서 15피트

부록2: 관련 기존 규정 및 기준

COVID-19 팬데믹 이전에 DC에서 공공 공간을 규제하는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정들은 본 문서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신청인들도 이 규정들을 보면 팬데믹이 종료되면 공공 공간이 어떻게 규제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DC의 공공 공간에 대한 아래의 규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 District of Columbia Municipal Regulations, Titles 11, 12-A, and 24
- Public Realm Design Manual
- DDOT Design and Engineering Manual
- Streetscape Design Guidelines

사이드워크 카페

파클렛 가이드라인

파킹데이 이벤트 가이드라인

블록 파티(Block Party) (경제 재개 1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않음), 참조용